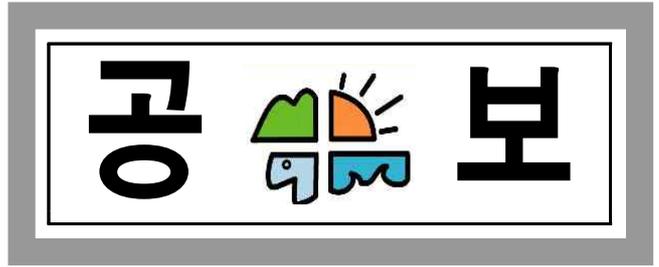


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269호 2020년 6월 23일(화)

## 훈 령

-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 ..... 2

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2020년 6월 23일

속초시장

(직인)

속초시 훈령 제 735 호

###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한다.) 제25조,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전단 중 “지원협의체에서 감시활동”을 “감시활동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연임”을 “1회에 한하여 연임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촉 해제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전임 감시원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전단 중 “하며 일요일은 휴무를 실시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”을 “환경자원사업소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위원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9조(수당지급)** 시장은 감시원에게 「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